



: 2017-03-29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누4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 [REDACTED] 주식회사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 시장
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6구단10810 판결
변 론 종 결 2017. 1. 19.
판 결 선 고 2017. 2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2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취득세, 등록세 등의 추정처분과 별지 2 처분목록 기재 각 재산세 등 추정처분을 각 취소한다.



이 유

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,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기재 '2008. 9. 22.경'을 '2008. 9. 18.경'으로, ② 제6면 마지막 행 기재 '2013. 2. 18.까지'를 '2013. 1. 28.까지'로, ③ 제9면 제6, 7행 기재 '(원고는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,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)'를 '{원고는 위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두3319호 판결은 구 지방세법(1997. 8. 30.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0조 제1항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위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두3319호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}'로 각 고치고, ④ 갑 제50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,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창한

 판사 김호석



.
.
: 2017-03-29

판사 김성준



<별지 1>

처분 목록

순번	과세물건	세목	납기내금액(원)
1	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	취득세	43,243,560
		농어촌특별세	4,324,330
		합계	47,567,890
2	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	등록세	43,243,560
		지방교육세	8,138,800
		합계	51,382,360



<별지 2>

처분 목록

순번	과세물건	과세기간	세 목	납기내금액(원)
1	[Redacted] 시 [Redacted] [Redacted]	2007년분	재산세	9,451,730
			지방교육세	1,890,346
			합 계	11,342,076
2		2008년분	재산세	11,891,963
			지방교육세	2,378,393
			합 계	14,270,356
3		2009년분	재산세	12,512,125
	지방교육세		2,502,425	
	합 계		15,014,550	
4	2010년분	재산세	12,512,179	
		지방교육세	2,502,436	
		합 계	15,014,615	
5	2011년분	재산세	12,721,382	
		지방교육세	2,544,276	
		합 계	15,265,658	
6	2012년분	재산세	9,124,005	
		지방교육세	1,824,801	
		합 계	10,948,806	
7	2013년분	재산세	9,437,027	
		지방교육세	1,887,405	
		합 계	11,324,432	
총 계			재산세	77,650,411
			지방교육세	15,530,083
			합 계	93,180,494